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846호)

2026. 3.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달회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1. 5.
3. 회 부 일 : 2026. 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주민센터 등 지역의 유휴공간에 설치하여, 이웃 간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육아 관련 시설로써,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돌봄품앗이 활동,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 및 아동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전담인력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성범죄에 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따라서,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가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Ⅲ. 검토의견

1.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육아나눔터 근무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3호 및 제57조제3항제15호).

[illegible]

현행	개정안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2. (생략)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4. ~ 26. (생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	----- ----- ----- -----. ----- ----- ----- ----- ----- -----. 1. ~ 22. (현행과 같음)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24. ~ 26.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현행	개정안
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u>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 제공기관</u>	15. <u>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 제공기관 및 공동육아나눔터</u>
16. ~ 17. (생략)	16. ~ 1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10년 이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업무 특성상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해당 기관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¹⁾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추가하고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육아나눔터 근무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고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임.

공동육아나눔터는 435개소(2025년 12월말 기준)가 설치·운영 중인데, 반드시 각 개소당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²⁾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시간제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담당 인력들은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용자 관리, 놀이활동을 위한 교구나 도서 관리,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현황 >

(2025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

구 분	2022	2023	2024	2025
개소 수	376	395	435	435

자료: 성평등가족부

또한,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공동육아나눔터를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³⁾ 제35조의2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2) 성평등가족부, “2026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침(2026년 가족사업안내 2권 발췌)”, 2026. 1. 8. 9쪽(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람을 종사자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⁴⁾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등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즉,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므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성평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 돌봄 공동체로 아동과 부모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며, 실질적인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아동이 자주 출입하는 시설에 해당함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돌봄 환경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입법으로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2026. 4. 23. 시행예정)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

료기사로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삭제 <2025. 4. 22.>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